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김영연*

- I. 서론
- II. 경합하는 두 주장: 『유연전』과 『이생송원록』 재고
- III. 유연 옥사 담론의 추이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항복의 『유연전』에 나타난 유연 옥사를, 『유연전』과 상반된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 권득기의 『이생송원록』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연 옥사를 거론한 문집 소재 기록들을 망라하여 검토함으로써, 유연 옥사에 관한 담론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유연 옥사는 대구 양반 유연이 형 유유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1564년 사형을 당했으나, 죽였다는 유유가 살아있음이 1580년에 밝혀짐으로써 유연이 신원된 일을 가리킨다.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은 1607년에서 1609년 사이에 각각 저술되었고 유연 옥사에 관해 대립적 입장을 보여준다. 『유연전』에 따르면,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획책한 주동자는 유연의 자형인 달성령 이지이다. 반면 『이생송원록』에 따르면 이지는 유연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이지가 유연을 모함해서 죽인들 이지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점과, 유연의 처 이씨가 부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기록들, 즉 유연 옥사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기록에서는 이지가 주범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유연 옥사의 범인 지목에 무관심한 기록들도 존재한다. 반면, 17세기 후반 이후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기록에서는 이상의 상호대립적인 두 주장은 더 이상 논쟁되지 않고, 「유연전」에서 택한 유연 옥사의 이해 방식, 즉 범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이지가 주범이라는 결론을 반복한다. 후대 문집에 보이는 유연 옥사에 대한 일견 대동소이한 담론들은, 애초에는 경합하고 있던 두 가지 관점 중 한 쪽 편에 탈락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또한 유연 옥사의 여러 측면 중 후대로 갈수록 이지의 범행만이 부각된다. 경쟁하는 관점의 배제와 사건 일부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유연 옥사 담론의 추이를 집단 기억의 형성과정으로 이해한다.

핵심어 : 이항복(李恒福), 「유연전(柳淵傳)」, 권득기(權得己), 「이생송원록(李生訟冤錄)」, 송사소설, 법문학, 집단기억

1. 서론

본고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유연전(柳淵傳)」(1607년)¹⁾과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이생송원록(李生訟冤錄)」(1608~1609년 추정)²⁾을 주 텍스트로 삼아 16세기 후반에 벌어졌던 유연(柳淵) 옥사에 관한 문인들의 논쟁과 담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연전」을 유연 옥사에 관한 논쟁 지형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유연전」의 텍스트적 위상이 정립되어 온 내력을 재고한다. 다음으로, 유연 옥사에 대한 「유연전」

1) 본고는 다음을 저본으로 활용하였다. 박희병,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 2006; 한국역대문집총서 233권, 『백사집』, 340~366면. 이항복의 「유연전」은 단권의 목판본 형태로 도서관 5군데에 소장되어 있다.(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한국학 중앙연구원, 계명대, 경기대. 이중 경기대본은 필사본이라고 하나 실물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항복의 『백사집』은 조선시대에 3차례 간행되었는데, 「유연전」은 그중 3차 간행 시(1726년, 영조2년)에 『백사집』에 수록되었다. (서한석,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8면.) 번역본은 다음을 따랐다. 박희병·정길수 편역, 「유연전」, 『봉이 김선달』, 돌베개, 2018, 135~164면.

2)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 의도와 그 수용 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화회, 2001, 21면. 송하준은 권득기의 『晩悔集』 내에 실린 「이생송원록」 전후의 작품들이 대체로 창작 시기를 명시하여 순차적으로 실려 있음에 주목하여 이상과 같이 「이생송원록」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였다. 권득기, 『晩悔集』, 한국문집총간 76; 권득기, 『晩悔集』, 道山學術研究院, 1997, 284~323면. 이하에 인용할 「이생송원록」은 도산학술연구원에서 출간한 책에 실린 국역본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시기의 텍스트들을 검토함으로써 유연 옥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유연 옥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등장한 이래, 『유연전』 쪽의 해석이 후대에 지배적 위치를 점해가게 되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록이었던 『유연전』의 해석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가는 현상을 집단 기억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³⁾과 『유연전』 및 『이생송원록』의 공통 서술을 토대로 유연 옥사의 사건 개요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564년, 대구 사람 유연(柳淵, 1537~1564)은 가산을 독점 상속할 의도에서 형 유유(柳游, 미상)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삼해교좌(三省交坐) 추국을 거쳐 처형되었다.⁴⁾ 그런데 1580년에 이르러, 살해당했다고 알려졌던 유유가 살아있음이 밝혀졌고, 1564년에 실종된 인물은 자신을 유유라고 사칭한 채응규라는 인물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유연의 처형이 부당했다는 데 대해서는 당대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유연의 옥사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을 달리 했다. 그 중 유연 옥사의 주된 책임을 유연의 자형(弟兄)인 이지(李祿, ?~1580)에게 돌린 것이 이항복의 『유연전』이고, 『유연전』의 주장에 대하여 이지의 책임을 부인한 것이 권득기의 『이생송원록』이다.

『유연전』을 다룬 선행 연구의 상당수는 『유연전』 측의 주장을 준신하고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생송원록』 측 주장을 배척해도 좋은가 하는 의문점에 착안하여, 『이생송원록』을 중요 참조자료로 삼아 『유연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두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본고의 전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유연 옥사를 둘러싼 쟁점인 유연 옥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좀 더 편견 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연전』을 주로 ‘소설’로 취급해 온 시각을

3)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1564년) 3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1580) 윤4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4) 조선 초에 강상범죄가 중시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강상범죄를 의금부 단독 추국이 아닌 삼성교좌 추국의 형태, 즉 성종 대 이후의 관례인 사헌부와 사간원 및 정승 1인이 주재하는 형태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82면, 307면). 이점은 유연 사건이 당시 관행에 비추어 보아 비교적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유보하고, 이 텍스트를 법적 기록의 일종으로 본다. 두 텍스트의 주안점은 공히, 실제 일어난 재판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유연전』 이해의 선결과제는 텍스트의 문예성을 음미하는 것 이전에, 우선 해당 텍스트를 통해 저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각 텍스트의 주장이 어떤 주장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본다. 셋째, 본고의 목적은 상반되는 두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거나 유연 옥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지 않다. 본고의 목적은 유연 옥사를 둘러싼 담론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여러 해석 중 특정 주장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간 내력을 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인식이 문인의 창작을 통해 개인 기억의 형태로 정착되고, 이 정착된 개인 기억이 다시 집단기억⁵⁾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유연전』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3)에서 공안(公案) 소설로 취급된 이래,⁶⁾ 이후 공안소설 또는 송사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김태준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들 상당수는 각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연전』을 ‘소설’이라 전제한 후에 이 텍스트의 문예적 성취를 논했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다.⁷⁾

5) 본고에서 칭하는 집단기억은 사회 집단 내의 2인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이나 정보를가리키는 ‘collective memory’의 번역어로, 뒤르케임의 제자였던 사회학자 알바쉬(Maurice Halbwachs, 1877~1945)가 1950년대에 발전시킨 개념에 착안하였다. 알바쉬에 따르면 집단 기억의 숙성은 사회 내 핵심인물(cadre)이나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게 되어있고, 그 때문에 개인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식에 크게 의존한다.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167~189. ‘집단 기억’ 개념이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온 과정과 알바쉬의 개념이 개인 기억을 집단 차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환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는 다음을 참조. Wulf Kansteiner, “Finding meaning in memory: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collective memory studies.” *History and theory* 41, no. 2, 2002, pp.179~197.

6) 김태준, 『조선소설사』, 예문, 1989, 153~158면.

7) 이수봉, 『유연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8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85~90면; 이현홍, 『實事의 小說化 - 柳淵傳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355~372면;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8, 132~133면. 노꽃분이, 『『유연전』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제30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이동근, 『傳樣式의 歷史的 展開樣相』,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연구, 『인문과학』 제37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정충권, 『『유연전』과 『화산중봉기』 비교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

이와는 관점이 다른 연구로, 『유연전』을 통해서 16세기 후반의 법적 절차와 상속 제도를 규명하려는 각도에서 접근한 사례가 있다. 정궁식은 『유연전』의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상충하는 두 가지 상속 관행, 즉 형망제급(兄亡弟及)과 입후봉사(立後奉事) 간의 충돌에서 빚어진 것으로 파악한 위에, 『유연전』에 그려진 사건의 핵심은 형망제급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유유의 처 총부(冢婦) 백씨가 형망제급 관행의 수혜자인 유연을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달리 말해 아직 입후 제도가 널리 확립되지 않았고 형망제급의 관행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총부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벌인 극단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 생산 당시의 상속 관행을 환기함으로써, 『유연전』에 그려진 인물들의 행위 동기를 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해준 장점이 있다.⁸⁾ 그러나 유연 옥사에 관해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는 『유연전』만을 검토한 결과, 『유연전』의 등장인물 일부를 악인으로 단정하는 이항복의 시각만을 추수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생송원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연구로 송하준, 신상필의 연구가 있다.⁹⁾ 송하준은 처음으로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본격 검토하고 그 내용에 일부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생송원록』은 이지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였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연전』 역시 이지에게 불리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송하준이 『이생송원록』에 ‘내용 자체의 모순’이 있다는 근거로 지적한 사건 순서의 불일치라는 것은 결국 『유연전』에 기술된 사건 순서와 불일치한다는 것이어서 『이생송원록』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필은 『유연전』과 관련된 문인들의 기록을 일괄 정리하여 유연 옥사를

학회, 2006; 신해진,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조도현, 『유연전』의 문학적 특성고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 중기의 사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제84집, 어문연구학회, 2015; 백지민,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전략 - 『유연전』과 『강로전』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8) 정궁식은 『유연전』을 ‘소설’로 명명한 국문학계의 연구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유연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작가의 허구적 창조물로서의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 소송 당사자들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본고의 관점도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다.

9) 송하준, 앞의 논문; 신상필, 2009,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 『유연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논한 사대부들의 논평을 검토하여 유연 옥사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시각을 열어준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생송원록』이 이지의 자손들의 강요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시각을 상당히 따르면서도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유연전』은 사실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연전』 이후에 지어진 사대부들의 유연 옥사 논평이 주로 『유연전』의 시각을 따른 이유를 『유연전』의 문장력에 대한 긍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 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¹⁰⁾ 또한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의 『유연전후서』는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¹¹⁾

본고에서는 『이생송원록』과 『유연전』의 주장을 교차 대조하고, 두 작품을 당대의 법률 문화를 반영한 텍스트로 취급한다. 이들 텍스트는 애초부터 법적 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쓰인 것인 만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법적 주장을 담은 글로 분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김태준 이래로 이 작품을 소설로 전제하고 접근한 연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필자가 볼 때, 『유연전』이나 『이생송원록』에 문예적 성취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각기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독자에게 최대한 확신시키고자 하는 시도의 부산물로 얻어진 것이다.¹²⁾ 따라서 본고의

10) 가령 1674년에 성주목의 간본으로 출간되어 단독 작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유연전』 텍스트가 1712년에야 간행된 권득기의 『만회집』에 실린 『이생송원록』보다 널리 읽혔기 때문일 가능성, 이항복이 후대의 문인 그룹에서 지냈을 정치적, 사회적 위상 같은 대안적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11) 우하영의 『유연전후서』에 대한 소개로 다음을 참조. 김정녀, 『『천일록』의 인물전을 통해 본 우하영의 교화론』, 한민족문화연구 제5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6, 89~90면.

12) 종전에 문학 텍스트로 연구되었던 작품을 법적 기록(legal record)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 Robert E Hegel, and Katherine N. Carlitz, eds. *Writing and Law in Late Imperial China: Crime, Conflict, and Judgment*.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Jisoo M Kim, *The Emotions of Justice: Gender, Status, and Legal Performance in Choso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6. Robert Hegel을 비롯한 해당 저서에 기고한 논자들의 연구는 명칭 시기 법률 문서와 소송을 그린 중국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 논자들은 공히 공식적인 법적 문서와 문학 작품은 경합하는 주장들 중에서 작자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도된 내러티브를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소송 문서와 소송을 그린 문학을 포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의 접근법도 이와 같다. Jisoo Kim 역시 조선시대 소지(所志)를 분석하면서 소송 관련자들이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환기했다. 한편 조선 후기의 문집 소재 자료를 대상으로, Robert Hegel 등이 명칭 시기 문학에 적용한 것과 같은 ‘법문학(Law and Literature)’의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한 선구적 시도로 다음 사례가 있다. 박소현, 『중국과 조선의 법률문화와 범죄소설의 계보학』, 『비교문학』 제53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11.

2장에서는 여태껏 다뤄지지 않은 두 텍스트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주장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비교하겠다.

3장에서는 『이생송원록』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전』 이후에 쓰인 유연 옥사에 관한 담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연전』에 주장된 내용으로 수렴되어 가는가를 고찰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본고에서는 이항복 개인의 견해로 남을 수도 있었을 의견이 유연 옥사에 관한 정론으로 확립된 것은 집단기억의 정착 과정에서, 경합했던 다른 의견을 배제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II. 경합하는 두 주장: 『유연전』과 『이생송원록』 재고

다른 텍스트와의 비교 없이 『유연전』의 스토리만 놓고 보면, 유씨 가문의 3남 유연이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고, 이후 유연의 누명이 벗겨지는 사필귀정의 줄거리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유연전』을 소설로 취급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그와 같이 스토리를 파악해 왔다. 그런데 『유연전』을 겨냥하여 쓰인 『이생송원록』의 주장을 참고하면, 『유연전』에는 저술 목적이 여럿 있지만, 유연 옥사에서 최종적으로 응징되어야 할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연의 자형 이지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데에도 한 목적이 있다.¹³⁾ 일례로 저자 이항복이 입전 의도를 밝히는 『유연전』 결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정승(이원익-인용자)은 대궐에서 물러나와 유연 집의 가승(家乘)을 모두 가져다 놓고는 나더러 어서 와서 글을 지으라며 말했다.

“이 글이 이루어진다면 지극한 원통함을 씻고 관훈(官訓)을 세울 수 있을 것

13) 이항복이 유연의 입전 의도를 천명한 『유연전』 결미 부분을 보면 이지와 심룡이란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 외에, 유연의 형 유유의 행적을 단죄하는 데에도 강조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의도는 『유연전』 작자의 저작 의도의 핵심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비되었는가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연전』 창작을 통해 이항복이 목표한 바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유연전』 창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저자의 여러 목표 가운데 당대의 다른 독자들에게 의해서 거듭 환기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니 그대가 글을 지어 보는 게 어떻겠소?”

나는 유연의 원통한 죽음이 슬펐고, 백씨(유연의 형수·인용자)를 먼저 조사해서 곤장 관아에 나오게 하지 못한 일이 애석했으며, 이지가 끝내 정도(正道)에 복종하여 왕족의 예(禮)에 합당한 죽음을 맞지 못한 것이 거듭 한스러웠다. 그나마 다행이다. 비록 당시에 범망이 허술해서 심룡은 빠져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윤선각과 이원익 등 여러 분이 전후좌우에서 유연을 도운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일이 어찌 당시에 드러나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¹⁴⁾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이상에 표명된 이항복의 저작 동기는 유연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사법 절차의 하자에 대한 규탄, 이지과 심룡에 대한 불충분한 응징에 대한 개탄, 유연의 신원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양 등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유연전』 내에는 백씨의 처신에 대한 질타와 윤선각·이원익의 공로에 대해서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당대에 문제가 된 것은 유연 옥사의 책임이 이지에게 있느냐의 여부였다.

『유연전』을 살펴보면 저자가 애초부터 이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서술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연전』의 줄거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前) 현감으로 대구에 사는 유예원의 둘째 아들은 유유, 셋째 아들은 유연이다. 어느 날 유유가 실종된 채 유예원이 죽고 유연이 유예원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 그 후 1562년에, 이지가 유연에게 편지를 보내어 채응규라는 사람이 바로 유유이니 유연이 와서 맞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연은 하인을 보내 유유를 데려오게 했으나 해주에 갔던 하인은 돌아와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하였다. 이지는 거듭 편지를 썼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적에 유연이 서울에 있는 이지의 집에 가서 채응규를 만났는데, 유연이 보기에는 과연 유유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유연은 고심 끝에 유유를 데리고 대구로 가다가 팔거(경북 칠곡군)에 이르러 채응규를 결박해 대구부에 넘긴다.¹⁵⁾

14) 退會，盡取其家乘，使來速課，曰：“此事若成，至冤可雪，官訓可立，子盍圖之？”余竊悲淵之冤，惜不令白氏先驗而徑適官，重恨視終不服正術而得道甸人之聲也。幸矣！當時網疎而蔭獨漏也，雖然事有不幸而幸者，不有尹、李諸公爲之先後而左右之，使淵有附驥之幸，則又惡能暴於當時，而施於後世哉？

15) 유유를 자처하는 인물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기를 서술하면서, 1580년에서야 밝혀진

이때 채응규의 첩 춘수가 나타나 대구 부사 박응천에게 호소하여 채응규를 보방(保放)으로 빼돌린 뒤 채응규는 도망치고 춘수는 붙잡힌다. 그러자 유유의 아내 백씨는 경상 감사에게, 유연이 남편을 살해하고서 흔적을 인멸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경상 감사는 대구 부사에게 명하여 유연과 춘수 등을 잡아 가두게 된다. 이때 유연 옥사에 관해 사간원에서 임금(명종-인용자)더러, 유연이 형을 죽였으니 서울로 잡아와서 죄를 다스리고 대구 부사는 파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연이 서울에 잡혀오게 되자 이지와 심룡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국문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로 모의한다.

1564년, 서울로 잡혀온 유연은 공초에서, 형수 백씨가 자신에게 형을 죽인 죄를 덮어씌웠으며 이지와 심룡(유연의 사촌누이의 남편)이 여기에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1564년의 국문에서 이지와 심룡은 채응규가 유연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무복(誣服)한 유연은 처형 직전 다시금 자신은 이지의 모함으로 원통하게 죽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또한 처 이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연은 이지와 심룡, 백씨와 채응규를 음모를 꾸민 사람으로 거듭 지목한다.

16년 뒤인 1579년, 경연에서 윤선각(尹先覺, 1543~1611)이 1560년에¹⁶⁾ 평안남도에서 유유를 만났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재심이 열리고, 유유가 살아있으며, 잡혀온 채응규의 첩 춘수는 공초에서 이지가 유연의 재산 천단을 시기한 나머지, 채응규를 이용해 유연을 모함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춘수는 채응규가 도주하고 유연이 죽은 후에도 이지는 거듭 춘수에게 지시해 유연 옥사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킬 조처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시 열린 1580년의 재판에서 이지는 장형을 받고 옥사하게 된다. 유연의 처 이씨는 유연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애쓰던 차에, 마침 이씨의 친정이 서울에 사는 정승 이원익의 집과 이웃해 있었던 덕으로 이원익이 사정을 알게 되어 이항복에게 요청하여 『유연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이 『유연전』에 실린 사건의 개요이다. 『유연전』에서는 유연 옥사의 책임이 심룡이나 백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 이 인물이 '채응규'라는 점을 작품 서두에다 소급해 서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유연전』에는 유유의 정체를 놓고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하는 서스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16) 『유연전』을 제외한 다른 기록들에서는 1570년으로 되어 있다.

이지에 대해서 유독 상당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유연전』에서 이지를 주범으로 모는 근거는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지가 유연에게 편지를 보내어 채응규가 유유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 둘째 유연이 처형된 재판에서 이지는 채응규가 유유가 맞다고 주장했다는 점, 셋째, 유연이 신원된 1580년 재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춘수의 공초에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이지의 재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편 『이생송원록』에서는 『유연전』의 이 세 가지 근거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이지가 주범이 아니며 유연의 처 이씨가 사태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첫째, 이지는 채응규를 처음 봤을 때부터 유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¹⁷⁾ 둘째, 이지는 1564년(갑자년) 재판에서 채응규가 유연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1580년 재판에서 이지를 주범으로 몰아간 춘수의 증언은 재판관의 강요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¹⁸⁾

『유연전』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외에도, 『이생송원록』에서는 이지에 게 유연을 제거할 경제적 동기가 없고, 유연에 대한 원한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유연이 처형된다 한들 유연의 재산이 이지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이지가 재물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종된 유유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 편리하지, 유유를 사칭하는 인물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연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굳이 그런 일을 벌일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연의 처 이씨와 유연의 혼사를 주선한 것도 애초에 이지였다고 주장하여 이지가 유연 부부에게 원한을 가졌으리라는 의혹을 불식하고자 하였다.¹⁹⁾

17) 이 사실을 입증해 줄 유연의 고종 형 이자철이라는 인물이 증인인데, 1580년 시점에는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이지가 유연을 모함했다는 춘수의 증언을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응규가 이지의 사주를 받지 않고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정황 증거들, 가령 채응규가 유유의 계집종과 정을 통해 유유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는 점, 경상도에서 벌어진 채응규의 도주에 대해 서울에 사는 이지가 사정을 파악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18) 先人供甲子所見，實非此人。故身以爲難辨眞僞，而淵遽認爲兄，與之俱歸，輾轉推遷，終成大獄。甲子推案，今若查攷，則身之初不以應珪必指爲游之意可見，(…) 先人甲子供辭，有形容顛異之間，眞僞未詳之語，則蓋深致疑於應珪之妄，初未嘗證之爲游也。設使證之，大丘之事，非先人所可知而所可證也。春秀始怨於先人之請拿，繼惑於色郎之指嗾，騁其兇詞，構以財利之說，使聽者眩亂而莫之察。

아울러 유연의 처 이씨가 언문으로 지었다고 하는 유연의 죽음에 관한 글과 『유연전』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유연 집안의 가승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연의 처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다른 증인들의 공초 내용을 몰랐으며 오로지 노복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지하여 십수 년 후에 글을 쓴 것이라 재판의 진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이어서 『유연전』에 나오는 십 여 가지의 구절을 들고, 그 진술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로, 이지가 무관하다는 증거는 자의적으로 배척한 점, 이지를 심문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연이 이지를 주범으로 지목할 구실이 없다는 점, 이지와 심통원(沈通源)이 모의해서 유연을 처형했다고 하지만 이지는 심통원과 친분이 없다는 점, 서울과 대구가 멀어 서울에서 일일이 춘수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유연전』의 “오류”는 그 원자료가 된 유연 처 이씨의 가승(家乘)이 오해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지의 집안에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켜 줄 1564년 재판과 1580년 재판의 推案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였다.²¹⁾

19) 若曰淵枯籠，成構殺而取其財云亦，則使淵見蔡而不認，固無奈何。設使淵認爲兄，蔡占游室，淵之財物，固自若也。必使始認而終覺其妄，繫於官而躲去，然後可構而殺之，先人豈能逆料其如此乎？且殺淵而取其財，逆而且難，不如占亡游之財，順而且易耶。況淵身雖死，淵妻李氏，乃先人執友寬之女也，比屋而居，契分甚厚，將死而托女於先人，故及笄而薦淵爲婿，此其年甚少，非所望於待死而取其財也。

20) 酒者，淵妻李氏，以諺字抄錄淵死之狀，完平麓城兩丞相，因之以作傳。夫李氏一婦人耳，其於淵冤枉之心，曲知之者，固莫能先也。至於當時鞫獄之情，證佐供招之辭，則有未能詳者。其所聞，蓋皆出於奴僕信口之傳，道聽塗說之訛，數十年後追抄之語，容有未得其實，其主意蓋在於明夫之冤，而於當時事情，不免有失實而涉於誣枉，則淵傳之語，亦多有違誤而相背者，今且舉其一二而辨之。

21) “아! 춘수의 무고가 이미 저 같고 유연전의 잘못이 또 이 같다. 이는 이씨의 가승이 거짓으로 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씨는 본래 선인을 원망해서 무고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묘년(1579)~1580년 옥사에서 죄가 선인에게 돌아갔으므로 이씨가 이 판결을 따라서 원망한 것일 따름이다. 채응규의 자취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자철(유연의 고종 형-인용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 기묘년 옥사가 일어난 당시에는 이자철은 이미 죽어서 심문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선인이 채가를 피려 한 것으로 의심하여 그 옥사를 마무리지었으니 이씨가 선인을 원수로 원망하는 것이 또한 어찌 초심이겠는가. 일월이 오래되고 전해들은 것이 잘못된 탓이다. 난리를 겪어 더욱 그 진상을 잃었으니 저의 소위 가승이란 것은 또한 어찌 가히 믿겠는가. 불초가 양년(兩年) 추안을 집에 감춰두어 전쟁으로 일어나는 화제를 두 번 지냈으나 다행히 보존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가히 증거가 될 것이다. 어찌 감히 두둑게 꾸며 모함하리오. (噫! 春秀之誣既如彼，而淵傳之誤又如此。其原蓋出於李氏家乘之誣也。李氏非素怨先人而誣之也，特以己卯之獄，歸罪於先人，故李氏從而尤之耳。珪之發蹤，始由于瞻，而已，卯獄興，子瞻已死，無從質問，故衆人遂疑先人之誘蔡以竟其獄。則李之仇怨先人，亦豈初心哉! 日月之久也，傳聞之謬也。經亂

『이생송원록』의 자료적 가치에 처음 주목한 송하준은 『이생송원록』에서 유연 처 이씨의 주장의 신뢰성을 공박하는 대목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항복이란 인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근거로 『유연전』 기록이 유연 처 이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겼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이항복은 여타 공식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입전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함을 몰랐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²⁾ 그는 『이생송원록』에 기록된 유연의 친척이나 집안 노비 등의 공초 내용을 이항복이 알았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판단 하에 『유연전』의 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연 옥사에 관련된 여러 공초 내용 중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점, 이항복이라는 인물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공평무사한 인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그 같은 판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²³⁾

III. 유연 옥사 담론의 추이

1. 대립하는 두 입장

이지의 범행 주도 여부를 놓고 대립되는 두 의견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유연전』에 표명된 관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而愈失其眞，則彼所謂家乘，亦豈必可信哉！不肖家藏兩年推案，再經兵火，幸而獲存，是猶可徵，豈敢厚誣。”

22) 송하준, 앞의 논문, 7면.

23) 이와 더불어 송하준은 이항복의 『유연전』 입전의도가 이지과 같이 “성품이 음험하고 일을 잘 꾸몄던” 인물을 들어 종실의 악행을 고발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정황으로 1607년 당시에 강상 범죄가 빈발했다는 점, 관원들이 죄인을 임의로 풀어주는 등 공직 기강이 느슨했다는 점, 종실의 횡포가 문제되던 시기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강상 범죄가 이 시기에만 발생했는가, 조선의 관료기구가 다른 시기에는 제 기능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이지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현존 문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 기묘년(1564년-인용자) 옥사가 뒤집힌 뒤로 사람들이 허물을 다 달성(達城) 술 이지를 가리킨다-인용자)에게 돌렸으니, 일의 시말도 알지 못하면서 말을 전해 가며 공격하는 자들이 하늘까지 뒤덮었습니다.²⁴⁾

심지어 『이생송원록』을 지어준 권득기조차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어 준 글의 신빙성 자체를 회의하고 있을 정도로, 세간에는 이지가 주변일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권득기가 『이생송원록』 짓게 된 경위를 회고하는 대목과, 『이생송원록』을 지은 것을 후회하는 자술이다.

… 제가 다만 열 살 정도가 될 때부터 천유용(유유를 가리킨다-인용자)의 옥사를 들었는데 당시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 다 달성(이지를 가리킨다-인용자)의 이름을 전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제가 바야흐로 어리고 어리석고 몽매하였으나 역시 의심이 없지 못하였던 것은 대개 채응규를 인정하여 유유라고 하는 것이 달성에게는 처음부터 손익이 없는 까닭이고 월경과 까만 점의 작은 일에 이르러서도²⁵⁾ 역시 이르지 않을 달성이 채응규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상 안방의 비밀이니 비록 계집종 중 가까운 자라도 알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달성이 만누이의 남편으로서 어찌 죽은 부인의 아우의 아내의 비밀한 일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데 중론이 다 달성에게 옥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 까닭을 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사 경술고에게 부쳐 준 글(附典慶上舍述古書)』²⁶⁾

바야흐로 원고를 기록하면서 묵묵히 스스로 생각하니 이 사람이 과연 원통하다면 내가 장차 음덕이 있을 것이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면 장차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둘째 아이 구(鳩)가 요절하였으니 전일의 생각이 마음에 왕래하지 아니치 못합니다. (중략) 달성이 원통하

24) “噫! 自己卯翻獄之後, 人皆歸咎於達城, 不知事之首末, 而猶誦言攻之者, 滔滔是也.” 권득기, 『晚悔集』 권4, 『附典慶上舍述古書』.

25) 『이생송원록』에 나오는 내용으로, 채응규가 대구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유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백씨와 결혼한 첫날 밤에 백씨에게 월경이 있었다는 이야기, 백씨의 다리에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진술한 것을 가리킨다.

26) 但自十許歲時, 聞天裕勇之獄, 當時走卒, 皆傳達城之名而罵詈之. 得已方稚少愚蒙, 亦不能無疑, 蓋認玆爲游, 於達城初無損益故也. 至於月事黑子之徵, 亦謂達城告之, 此實閨房之祕, 雖女僕之親切者, 有不能知, 況達城以姐夫, 豈能知亡婦弟妻之密事耶? 然而衆論皆歸獄達城者, 其故蓋未可知也. 권득기, 『晚悔集』 권4, 『附典慶上舍述古書』.

고 앓고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못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라는 것은 성인이 훈계하신 바입니다. (중략) 또한 채가를 유유라 한 것은 비록 달성의 알 바 아니었겠으나, 유연의 옥사가 이루어진 것은 달성의 소위가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²⁷⁾ 『박성 군에게 주는 글 (與朴君省書)』

두 인용문 모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지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득기가 보기에 이지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권득기 자신이 썼던 『이생송원록』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610년 겨울에 쓴 편지로 추정되는 『여박군성서(與朴君省書)』에서는²⁸⁾ 이지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어조가 바뀌고 있다. 이 대목을 두고 선행연구에서는 이지가 최소한 유연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조한 혐의는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²⁹⁾ 그러나 이지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귀책하는 것과, 이지를 주범으로 판단하는 주위의 지배적 의견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후자에 해당한다. 또한 권득기가 자신의 애초 입장을 회의하는 이유가 논리적 근거나 물증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연이은 죽음³⁰⁾과 『이생송원록』을 쓴 일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지를 주범이 아닐 수 있다는 권득기의 애초의 회의를 정당한 반박을 거쳐서 거두어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박군성서(與朴君省書)』에서조차, 채응규를 유유라 한 것은 이지가 관여한 바 아니었으리라는 종전의 입장은 견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입장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요컨대 유연의 죽음이 이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

27) 方屬藁也，默自思惟，這人果冤，則我將有陰德，不冤則將有天殃，未幾而次兒樞夭折，則前日之念，未嘗不往來于心中也。(중략) 夫達城之冤與不冤，蓋未可知也。但衆惡必察，聖人所訓。(중략) 抑以蔡爲游，雖或非達城之所知，淵獄之成，安知非達城之所爲乎? 권득기, 『晩悔集』 권4, 『與朴君省書』.

28) 송하준, 앞의 논문, 24면.

29) op. cit.

30) 송하준에 따르면 권득기는 『이생송원록』과 『與朴君省書』를 쓰는 1년 사이에 둘째 아들 외에도 모친과 부인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지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 1607~1609년 사이에 정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후자의 견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권득기의 글이 거의 유일하여, 거의 지지 받지 못한 견해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항복의 『유연전』 식 관점에 대한 가장 명시적인 반대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항복 스스로가 이지 아들 이언관의 요청을 수용해서 지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유연전 후서』(현전하지 않음)를 지었다는 것이다.³¹⁾

내가 무신년(1608년-인용자)에 내가 허경보(許警甫)를 방문하였더니, 지의 아들 이언관이라는 자가 소매에 책 두 권을 넣어 가지고 나에게 보였다. 그 하나는 바로 오성 이항복이 찬술한 『유연전』의 후서(後敍)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에 간직하고 있는 옥사(獄辭)로, 오성이 그것을 취하여 후서를 지은 것이다. 이언관이 자기 아버지의 죄악이 『유연전』에 실려 있으므로 몰래 오성에게 빌어서 그가 원통하다고 하게 한 것이다. 오성이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다시 후서를 지었다고 한다. 지가 죽임을 당한 지 이미 30년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다 통쾌하게 여겨 여러 사람의 입에서 하나같이 말하고 있으니, 오성의 정에 쫓은 일정하지 못한 글이 지의 죄악을 가릴 수 없었다. (김시양(金時讓, 1581~1643), 『부계기문』) ³²⁾

요컨대 유연 옥사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지가 주범인가 아닌가를 두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인 이항복과 권득기 자신도 입장을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³³⁾ 이로써 후대에 일정한 지지를 받게 되는 이항복의 관점도 당대

31) 신상필, 앞의 논문, 131면.

32) 戊申余訪許警甫，視之子彥寬者，袖二卷書以示之，其一乃鰲城所撰柳淵傳後敍，而其一則渠家所藏獄辭，鰲城所取以爲紱者也。寬也以父惡載於淵傳，陰祈於鰲城稱其冤，鰲城畏其報復有後言云。視之誅已三十年矣，人皆快之萬口一辭，非鰲城循情不定之筆所能掩也。；『유연전 후서』를 언급하는 또 다른 글로 다음을 참조. 이덕형(李德炯, 1561~1613), 『與李子常書』, 『漢陰先生文稿』 권10, “어느 족질이 저에게 와서 새로 인쇄한 『유연전 후서』를 보여주었으니, 바로 달성(이지-인용자)의 아들이 의지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번 읽어봐 주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에 달성이 잡혀 있을 적에 심문받은 내용이라고 하여 제가 전해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형께서는 이미 이 옥사의 재판관이 그러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수고스럽게 그 두 차례의 옥사에 관해 말씀하십니까? (有族姪來示新印柳淵傳後敍，乃達城之子憑所知人，而要不一看者也，其間或有異於達城因榜時所傳聞者。台兄既非此獄委官，何勞拈起兩滯認爲哉?)”

33) 김시양의 기록은 간접 기록이므로 이를 토대로 이항복의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동의하며 소중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한 가지 덧붙여 두고 싶은 점은 본고에서 다루는 바, 유연 옥사를 언급하는 모든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간접 기록이다. 본고에

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 17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관점들의 변전과 수렴

『조선왕조실록』과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을 제외하면, 16~19세기 사이에 유연 옥사를 언급한 글 중 현전하는 것은 총 18편이다.³⁴⁾ 이들은 이지가 채응규를 사주하여 유연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명시적으로 반복하였거나, 유연 옥사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이지가 악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장이 이지를 주범으로 모는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지의 책임 여부에 무관심하거나, 유유의 처 백씨의 탓으로 보거나, 이상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재판관의 불찰 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이지의 주범 여부에 무관심한 기록 중 권시(權誥, 1604~1672)의 글을 주목할 만하다. 권시는 『유연전』을 소재로 삼아 인목대비 유폐 시기 이항복의 처신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연전에 이르기를, 유연이 채응규를 백씨에게 보이지 않고서 먼저 결박해서 관가에 보낸 것이 애석하다고 했으나,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유연이 이미 채응규가 형이 아님을 알았은즉 관가에서 추문(推問)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백씨에게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옳은 일이겠는가. 백씨가 만약 채응규를 유유라고 보증한다면 유연은 그를 형으로 섬길 것인가? 나는 생각건대 유연은 서울에 가서 채응규를 처음 만났을 적에 채응규가 가짜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즉 마땅히 놀비(백씨의 여종·인용자)가 질타하고 화낸 것과 같이 유연은 채응규를 배척했어야 옳다. 어찌하여 동행하여 대꾸까지 온단 말인가. 이것이 애석하다.

오성의 뜻은 아마도 백씨에게 채응규를 보였다면 백씨가 채응규가 가짜라고

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의 실상이 아니라, 사건을 놓고 언술로 표명된 여러 입장들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김시양의 기록을 통해서 이항복이 실제로 보복을 꺼려 후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 이항복의 『유연전』이 적어도 창작 당시에는 일정한 도전을 받는 견해라고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34) 뒷면의 표 참조. 본고의 분석적 필요에 의하여 유연 옥사를 단편적으로라도 언급한 대목이 있는 기록은 모두 포괄하였다.

배척했을 것인즉 유연이 절로 억울하게 죽는 원통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고, 백씨가 유유라고 보증해 주었다면 죄가 백씨에게 돌아가고 유연은 죄를 면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연이 채응규를 유유라고 인정한다면 유유라고 해야 하겠고 채응규를 살피 거짓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짓이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당한 실상이다. 마음으로는 채응규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백씨에게 데려가서 결판을 내서 진짜니 가짜니 한다면 죄는 당연히 백씨에게 돌아가고 자기만 면할 것이니, 유연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좋겠지만, 그리되면 의(義)는 어디에 있었는가?

일찍이 보니, 매사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면하려는 계책을 내려고 한다. 바야흐로 대비가 서궁에 쫓겨나 거하던 시절에 지위에 있던 자들은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고 간할 수 없으면 지위에서 떠나는 것이 옳고 떠나지 못하겠거든 죽는 것이 옳았다. 조정에서 청하는 때를 당하여 말하고자 하면 죽는 것이 두렵고 묵중하자니 의가 두렵고 하여 구차히 살아서 양쪽 다를 면하는 계책을 낸 것이다. 대신 중에 말하는 자가 다만 은미하게 자신을 드러낼 뿐 역시 분연히 죽기로 감히 간언하지 않고, 다행히 죽음을 면하여 또한 다행히 군자의 기용을 받는 것을 면했으니, 혹은 교묘하게 피하여 조정에서 청하는 것을 멈추었다. 대비가 이미 쫓겨나고 나서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좋은 것이었겠으나, 생각건대 충으로써 군주를 섬기고 이를 통해 군주를 섬기는 의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³⁵⁾

이상은 『붕우견경지(朋友見警識)』에 실린 글 중 『유연전』에 관해 언급한 부분 전문(全文)이다. 이 글에서 권시는 이지가 범인인가를 따지지 않고, 유연 옥사를 구실로 인목대비 유폐시기에 관직 생활을 했던 이항복의 경력을 암암리에 비난하고 있다. 일견 『유연전』에서 행한 이항복의 논평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단락에서처럼 이항복의 관직 경력을 규탄

35) 柳淵傳曰，惜淵不見蔡於白氏，而徑先縛囚于官，愚意不然。淵既知蔡之非兄，則欲推問于官，固所宜然也。見之於白，是誠何義？白若證蔡爲游，則淵將兄事之耶。愚謂淵當至京初見之時，卽審其僞，則宜如訥飛之叱怒，而斥逐之可也。何乃同行至大丘乎，此可惜也。龜城之意，蓋謂見之於白，而白斥其僞，則淵自無枉死之冤，白證爲游，則罪歸於白，而淵則免矣。夫淵認蔡爲游，則當曰游，審蔡之僞，則當曰僞，是乃正大之情也。心知其僞，而乃取決於白氏，曰眞曰僞，罪自歸於白，而已則免，自爲計則得矣，顧於義安乎？嘗見凡人每事，惟欲爲自免之計。方大妃遜居西宮之日，在位者當以死諫，不可諫則去之可也，不可去則死之可也。當庭請之時，欲言則死可畏，欲從則義可畏，於是苟生兩免之計，大臣之言者，但微示己見，亦不奮死敢言，幸免於死，亦幸免君子之譏，或曲爲規避，庭請既止，大妃既遜，復入於朝，其自爲計則得矣，恐非事君以忠，以道事君之義也。(權諤, 『炭翁集』 권11, 閑居筆舌, 『朋友見警識 [并自警識]。)

하는 데 글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고상안은 유연 옥사의 주된 책임을 유유의 처 백씨에게 돌림과 동시에 유연 옥사를 구실로 하여 유연의 동향사람이자 본인과 인연이 있는 인물인 서형(徐炯)이 이 재판과 관련하여 맞게 된 불운을 알리는 데 치력하고 있다. 요지는 채응규의 대구 재판 당시 서형이 유연의 편을 들어 채응규가 가짜 유유라고 했다가 정거(停擧)를 당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유연이 살인 혐의로 죽게 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서형이 사사로운 뜻에서 유연 편을 든 것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유연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이후에도 서형의 억울함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은 서형의 양자(養子)와 동방(同榜)의 인연이 있으므로 이 사안을 재론한다고 하였다.

접때 만약 당일에 유유의 한 마디 말이 없었다면 백씨가 장차 채응규의 처가 되어서, ‘노비를 매수해서 늙은 남자를 얻었다’는 격과 같이 타인을 남편이라 부른 일과 똑같이 더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저 채응규의 사특한 모략을 낸 일은 바로 덕흥군 부인³⁶⁾의 일을 통해 알 수가 있다. 한스러운 것은 서형에 대해서는 변무하지 못했고, 서시옹도 죄책을 받고 죽게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어릴 적에 서공(서형을 가리킴-인용자)의 양자 서사원(徐思遠)³⁷⁾과 더불어 동탐의 우호가 있었는데, 매번 서공을 볼 때에 항상 불만의 기색이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 자못 통절히 후회스럽고 한스럽다. 그러므로 전의 두 단락을 이어 유유의 일을 기록하여 억울한 일의 만분의 일이라도 밝히 설한하려 한다.³⁸⁾

위 인용문은 전체 글의 결미인데,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지가 유연 옥사의 주범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로, 백씨의 동기를 질책하는 한편 서형의 입장을 극력 해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권시와 고상안의 글은 일견 유연 옥사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체로 무관

36) 『고려사』에 나오는 영흥군 왕환의 일을 가리키는데, 고상안은 덕흥군으로 적고 있다. (『고려사』 열전 91, 열전4, 종실 참조)

37) 서사원(1550~1615)은 생부는 전교 서흡(徐洽)이며, 큰아버지 서형(徐炯)에게 입양되었다. 정구(鄭述)의 문인이다.

38) 向使當日無柳游之一言，則白氏將爲應珪之妻，而與買奴得翁，謂他人夫者，一樣污穢矣。彼應珪之做出邪謀者，乃德興君夫人有以啓之也。所可恨者，徐河未及辨誣，時雖不受罪責而死耳。吾少時與徐公養子思遠有同榻之好，每見徐公常有不滿之意，到今思之，頗切悔恨。故因前二段而記柳游之事，以昭雪冤枉之萬一也。(『秦村集』 권4, 『效嘯雜記』上, 柳游離居他方或人詐爲柳游而入其家)

심하고,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주범을 이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이항복의 『유연전』의 관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편을 제외하면, 실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은 이항복의 『유연전』 식의 관점을 따른 것이며,³⁹⁾ 권시와 고상안의 의견은 유연 옥사에 관한 의견 중 예외적인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보다 후대로 갈수록, 『유연전』의 관점, 즉 이지가 주범이라는 관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표 참조) 그리하여 유연 옥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문인들은 이지가 악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하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유연 옥사를 상당한 비중으로 거론하는 기록들에서 이지가 유연의 죽음에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회의하는 기록은 앞서 거론한 『이생송원록』을 제외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유연 옥사 관련 기록 (저자 생년 순)

| | 저자명(생몰년) | 수록처 | 비고 |
|---|--------------------|--|---|
| 1 | 이문건 (1494~1567) | 『默齋日記』 | 유연이 자신을 방만한 일 등에 대한 단편적 언급 |
| 2 | 권응인 (생몰년 미상) | 『松溪漫錄』 | 이지의 책임이 있다고 봄. “柳之姊翁宗室達城令, 【後爲都正】 與蔡通謀圖利於己, 佯以蔡爲游殺淵, 而共分其財, 以書貽淵曰” |
| 3 | 하항 (1538~1590) | 『覺齋集』, 『行錄略』 | 이지를 악인화 함. “嘗見同壻達城令曰, 此人不吉, 若不善處, 禍將及吾. 盡逐其婦家臧獲, 絕不通, 後果釀禍, 人服其知人.” |
| 4 | 윤국형 (1543~1611) | 『聞韶漫錄』 | 이지의 책임 여부에 무관심 |
| 5 | 고상안 (1553~1623) | 『秦村集』 권4, 『效嚙雜記』 上, 『柳游離居他方或人詐爲柳游而入其家』 | 주로 백씨 탓으로 보나 이지의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음. “應珪得其日記, 陰與宗室某同謀” |
| 6 | 이덕형 (1561~1613) | 『漢陰先生文稿』 권10, 『與李子常書』 | 이항복의 입장 반복에 대한 질의. |

39) 신상필, 앞의 논문, 129면. 신상필은 대부분의 후대 논의가 재판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정(失政)을 경계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와 같은 일반적 훈계보다는, 유연 옥사에서 이지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야말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사안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 | | |
|----|--------------------|---|---|
| 7 | 이수광 (1563~1628) | 『芝峯集』 권23, 『工曹判書尹公墓誌銘』 | 단편적 언급. |
| 8 | 권필 (1569~1612) | 『石洲集』 권7 | 이지의 책임 여부에 무관심 |
| 9 | 이시발 (1569~1626) | 『碧梧遺稿』 권7, 『謾記』 | 재판에서의 억울한 피해자 발생에 주목. 이지 에 대한 공박. “厥後其妹婿宗室達城令性行悖惡” |
| 10 | 임숙영 (1576~1623) | 『柳淵傳後序』 | 전하지 않음 |
| 11 | 김시양 (1581~1643) | 『涪溪記聞』 | 1612년 작. 이항복이 후에 이지를 두둔해 준 데에 대한 공박. 이지 에 대한 공박. “達城令視, 以蔡應圭爲柳游賊其弟淵, 天鑑至冤, 幸而昭雪, 視服其罪.” |
| 12 | 하홍도 (1593~1666) | 『謙齋集』 권7, 『답姜涵別帖』 | 이지에 대한 공박. “故吾先進河覺齋, 於其姻 婭達城令家有鸚鵡, 先生入而自見逐, 厥後永 絕, 可見其有邪而畏正人也.” |
| 13 | 권시 (1604~1672) | 『炭翁集』 권11, 『朋友見警識 [并自警識』 | 이지의 책임 여부에 무관심 |
| 14 | 송시열 (1607~1689) | 『宋子大全』 147, 『柳淵傳跋』 | 이지에 대한 공박. “視也以王室之親, 悖傷麟 趾之化, 宣廟不屈祥刑, 與衆棄之.” |
| 15 | 박세채 (1631~1695) | 『南溪集』 권80, 행장, 『司諫院司諫贈弘文館副 提學朴公行狀 [甲辰九月二十九日』 | 단편적 언급 |
| 16 | 이익 (1681~1763) | 『星湖僊說』 권12, 『人事門』 | 유연이 여막 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옴. 이항복의 『유연전』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지 의 책임이라는 관점도 수용함. “視從患沈隆以 實之, 遂刑訊認服.” |
| 17 | 우하영 (1741~1812) | 『千一錄』 권9, 『雜錄』 下, 『柳淵傳後序』 | 이항복의 『유연전』을 거의 전재하여 이지의 계약이라는 관점을 수용함. 다만 주된 책임을 백씨와 재판관의 탓으로 봄 |
| 18 | 김평묵 (1819~1891) | 『重菴集』 권46, 『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 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 大司憲。楊村鄭公墓碣銘』 | 단편적 언급 중에 이지를 악인화 함. “宗室達城 令視, 染顧婦家財業, 誣告婦弟柳淵弒其兄游” |
| 19 | 유중교 (1832~1893) | 『省齋集』 권41, 『柯下散筆』,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 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 司憲鄭公墓誌銘並序』 | 단편적 언급. |

* 이지를 주범으로 보거나 이항복의 『유연전』의 관점을 따라 이지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음영 표시하였다.

III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두 가지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첫째, 이항복의 「유연전」은 이항복 본인만의 견해라기보다 당대에 지배적이던 의견, 즉 이지가 주범이라는 견해를 수렴한 것이다. 둘째, 이지가 과연 주범인가 하는 사안은 17세기 초 당시에는 이항복이나 권득기처럼 해당 사안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저자들조차도 입장을 번복할 만큼 불안정한 것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점차 「유연전」 식의 주장이 그와 경쟁하는 주장들을 압도해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항복의 「유연전」에서 피력된 것처럼 이지가 주범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인 추세로 후대 글에서 반복되는 까닭이, 선행 연구의 시각처럼 복잡한 사건을 조리 있게 서술한 작자의 공로에 있는가 하는 점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⁴⁰⁾ 앞서 권득기의 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항복이 대변하고 있는 바, 이지가 계획적으로 유연을 궁지에 몬 것이라는 시각은 이항복의 고유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지배적인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다. 이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굳이 이항복의 작가적 기량이나 전 양식의 장르적 이점에 힘입어 이견을 압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어느 한 입장이 우세하게 된 현상의 기저에는 한 가지로 환원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이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항복의 「유연전」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 지배적 의견이 된 주원인이 무엇이나를 묻는 것은 적절한 연구 질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선 어떤 한 관점이 우위를 지니게 된 현상을 집단기억의 형성과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 일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미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관점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술가의 저작에 힘입어 널리 수용되는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호근이 이해한 바의 알바쉬의 의견과 같이, 순수한 개인적 기억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기억은 집단 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¹⁾ 알바쉬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기억은 사회 집단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

40) 신상필, 앞의 논문, 129면.

41)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163면.

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선택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 것이나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배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⁴²⁾ 이항복의 『유연전』 저술은 저자 개인의 기억 방식이 사회 내 지배적인 인식을 수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알바쉬가 고안해 낸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후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는 개인 차원의 기억이 집단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의해 주조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반(反) 개인적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집단 기억이 단순히 개인 기억의 총합(collected memory)이 아닌데도, 부지불식간에 개인 기억의 총합으로 간주된 위에 개인 심리를 분석하듯 집단 기억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왔다는 것이 그것이다.⁴³⁾ 『유연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지가 주범이라는 시각이 당대에 간혹 도전을 받기는 했으나 상당히 지배적인 견해였고 후대에 이르러 압도적으로 수용된 점은, 전자와 관련하여,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개인과 집단 중 집단의 영향력이 압도적임을 보여준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 크라스너(Krasner)에 따르면 집단 기억은 개인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억압된 것의 귀환(Return of the repressed)” 같은 개인 심리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살핌으로써 어떤 관점이 채택되고 배제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⁴⁴⁾ 크라스너는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이 개인 기억 혹은 개인 기억들의 총합과 별 차이 없이 이해되어 온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종전의 개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이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즉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건에 관해 제한된 범위의 스토리나 이미지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문제시 되지 않는 한 몇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현(represent)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 개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 기억을 규정하게 되면, 이 개념은 유연 옥사를 운위한 담론들의 전승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42) Maurice, 앞의 책, 53면.

43) Krasner, 앞의 논문, 181, 185~187면.

44) 위의 논문, 189~197면.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연의 죽음을 누가 획책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논하는 자의 처신이 문제라는 시각, 혹은 유연 옥사의 책임이 이지가 아닌 백씨에게 있다는 시각, 혹은 유연 옥사의 애꿎은 피해자를 신원하려는 시각 등 다양한 시각들이 17세기까지도 존재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유연 옥사와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사라지고 해당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후대인에 의해, 유연 옥사에서 이지의 책임이 크다는 스토리만이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연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적어도 의견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며 호소력 있는 반론은 잊혀졌다. 그리고 개인 기억과 달리, 이렇게 배제된 기억은 다시는 귀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유연 옥사에 대해 갖게 된 대체적인 상(象)은 어떤 악인이 고의적으로 처남을 흉계에 빠뜨려 죽였다는 것이었다. 후대 연구자들의 관점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유연전』의 관점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칭할 만 하다. 유연 옥사에서 이지가 주범이라는 관점은 경쟁하던 다른 관점들을 배제한 결과인 동시에 유연 옥사에 대한 다른 여러 측면을 탈각시킨 제한된 범위의 스토리로서, 유연 옥사와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은 다수 개인들에 의해 의문시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연전』은 유연이라는 인물을 형상화 하는 데 목적을 둔 예술 작품이기 이전에, 유연 옥사의 책임이 특정 인물에게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합의된 사항이었고, 정작 논쟁적인 대목은 이지가 유연 옥사의 주범이라는 주장이었다. 둘째, 이지의 주도로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주장은 17~18세기를 거치면서, 그 위상이 높아져갔다. 환언하면 후대에 지배적 관점이 된 그 특정한 해석은 등장하는 시점부터 그 자체로 자명했던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주장을 배척한 결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유연전』의 관점은 이지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망각

하고, 이지가 주범이라는 시각을 대를 거듭하며 반복해 간 다수 문인들 반(半)-자각적 동참을 통해서 ‘집단 기억’으로 정착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의 논의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특정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갱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상의 갱신을 요구한다. 즉 기존에 문학 텍스트로 불러온 자료들을 논의할 때, 서구 문학사에서 빌려온 ‘소설’ 같은 개념을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연구하기보다, 각 작품들이 애초에 어떠한 동기에서 지어졌고, 해당 작품의 주지가 어떠한 주장에 대한 반대 향으로서 나왔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 질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문집 소개 한문 텍스트의 경우, 작자의 창작 동기가 무엇이나는 질문이 우선 해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법적 분쟁을 다루는 글의 경우, 해당 텍스트 내에 개진된 주장 중 어느 대목이 그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반대 주장과 대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유연진』은 일차적으로는 『이생송원록』의 시각과 경쟁한 텍스트였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둘째, ‘집단기억’이라는 역사학 개념의 차용을 통해 특정 작품 속의 일부 내용만이 후대에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개념화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유연진』의 시각은 결과적으로 이후 몇 세대에 걸쳐 유연 옥사에 관한 일부분만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결과, 유연 옥사를 기억하는 후대 문인들의 시각을 규정하게 된 텍스트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유연진』 및 관련 텍스트 뿐 아니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여타 작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柳淵傳』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奎 5868; 목판본)

연세대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I) 920 유연 유)

경기대 소장본 (청구기호: 경기-K115681; 목판본)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본 (목판본)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이) 920.0515 유연○; 필사본)

국사편찬위원회, 1998, 『默齋日記』 下, (한국사료총서 41), 국사편찬위원회, 1998.

권득기, 『晚悔集』 上, 서울: 道山學術研究院, 1997.

권득기, 『晚悔集』, 道山學術研究院, 1997, 284~323면.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71~1975.

이항복, 『白沙先生集』, 한국역대문집총서 233.

『고려사』

『명종실록』

『선조실록』

2. 단행본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2018, 『붕이 김선달』, 돌베개, 2018.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우하영, 『千一錄』,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영인본) 비봉출판사, 1982.

우하영, 화성시 편역, 『역주 천일록: 종이에 담은 천향』(화성역사자료총서 8), 화성시, 2015.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Hegel, Robert E., and Katherine N. Carlitz, eds. *Writing and Law in Late Imperial China: Crime, Conflict, and Judgment*.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Kim, Jisoo M. *The Emotions of Justice: Gender, Status, and Legal Performance in Choso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6.

3. 논문

-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52면.
- 김정녀, 『『천일록』의 인물전을 통해 본 우하영의 교화론』, 한민족문화연구 제5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6, 71~102면.
-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 중기의 사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제84집, 어문연구학회, 2015, 49~85면.
- 다케다 아키라, 강용권 역, 『한국에 있어서의 조상숭배의 분할에 대하여』, 『석당논총』 제10집, 동아대학교 석당전문화연구소, 1985, 193~218면.
- 노꽃분이, 『『유연전』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345~371면.
- 박소현, 『중국과 조선의 법률문화와 범죄소설의 계보학』, 『비교문학』 제53집, 한국비교문학회, 2011, 49~79면.
-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연구』, 『인문과학』 제37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101~124면.
- 백지민,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전략-『유연전』과 『강로전』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85~114면.
- 서한석,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42면.
-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75~101면.
-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 『유연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121~141면.
- 신혜진,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면.
- 이동근, 『傳 樣式의 歷史的 展開樣相』,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303~327면.
- 이수봉, 『유연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3, 139

~168면.

이현홍, 『實事의 小說化 - 『柳淵傳』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355~372면.

정공식, 『『유연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이수성선생 환갑 기념논문집), 동성사, 2000, 121~140면.

정공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21, 한국법사학회, 2000, 83~100면.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제30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3~158면.

정충권, 『『유연전』과 『화산중봉기』 비교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387~409면.

조도현, 『『유연전』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29~245면.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159~189면.

Kansteiner, Wulf. "Finding meaning in Memory :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collective memory studies." *History and theory* 41, no. 2, 2002, pp. 179~197.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

A study of the *Biography of Yu Yŏn* and related discours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Kim, Young-yeon

This article contrasts a narrative presented in the *Biography of Yu Yŏn* (hereafter the *Biography*) written by Yi Hangpok(1556~1618) with an argument of *Yisaeng songwŏllok* written by Kwŏn Tŭkki(1570~1622). The two texts draw two incompatible claims about who made a false accusation against an innocent man Yu Yŏn. This paper asks how and why Yi's narrative, not Kwŏn's argument, dominated the subsequent generations' perception of the trial by investigating elite discourses produced in the later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he biography tells the story of Yu Yŏn, a man who was accused of killing his brother, was sentenced to death, and was executed. The narrative of the biography spots Yu's brother-in-law Yi Ji as a man who engineered the false accusation and Yu's death. In contrast, the *Yisaeng songwŏllok* raises diametrically opposite claim on the person who responsible for Yu's death.

Authors of the later generation who mentions the case display a wide range of views: one does not ask who is responsible for Yu's death, one has no interest in determining the villain of the case. However,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most of the authors who remark Yu Yŏn's case express similar ways of understanding the event: they acquiesce Yi's perception on the case, wittingly or unwittingly. This survey shows that the Yi's view on the case which dominated the perception of the later generation, including modern researchers, and that Yi's story became established as a collective memory after surviving a long process of contesting, forgetting, and reduction.

keywords: Yi Hangpok, *Biography of Yu Yŏn*, Kwŏn Tŭkki, *Yisaeng songwŏllok*, crime fiction, law and literature, collective memory.